

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시법원

판 결

사 건 2021가소57927 임금
원 고 제이마크(VIDAL JAYMARCK)
김포시 양촌읍 황금1로 136 (학운리)
송달장소 김포시 양촌읍 황금로 117, 다동 301호 (학운리, 이젠물)
피 고 손기영
김포시 김포한강3로 290-16 (장기동, 고창마을이니스터원)
송달장소 김포시 양촌읍 황금1로80번길 55, 우주박스
변 론 종 결 2021. 9. 29.
판 결 선 고 2021. 10. 13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7,466,040원과 이에 대하여 2021. 5. 26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.
3. 소송비용은 4분하여 그 1은 원고가,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.
4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에게 9,944,773원과 그 중 2,478,733원에 대하여는 2019. 12. 24.부터 다
값는 날까지 연 20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, 7,466,04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
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값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.

이 유

- 퇴직금에 대하여는, 피고가 2020. 1. 8. 원고에게 퇴직금 중 보험회사가 지급한 보
험금을 공제한 나머지 잔액과 임대차보증금 합계 3,859,358원을 지급한 것으로 판단된
다.
- 연금보험료에 대한 업무상 횡령에 따른 손해배상금 청구 부분은 이유 있으므로 인
용한다.

판사

홍다선

홍 다 선



※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.